

● 제277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7. 12. 18.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김선갑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220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선갑 의원(김기대 외 10명)
- 나. 제안일 : 2017. 11. 6.
- 다. 회부일 : 2017. 11.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현행 서울시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연장되거나 성과 없이 종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3개월 동안 활동하지 않는 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활동기한 이내라도 본회의 의결로 그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 전까지 중간보고서와 연장 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의장이 활동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37조제7항).
-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7조제8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연장되거나 성과 없이 종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3개월 동안 활동하지 않는 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활동기간 연장 시 중간보고서와 연장사유를 운영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활동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임.

2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및 활동기간 연장 관련 (안 제37조제4항 및 제8항)

- 「지방자치법」(이하 ‘법’)은 지방의회 위원회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구분 하고(제56조), 특별위원회 설치 시 그 활동 기간을 정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시행령 제56조).
-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활동 기간을 연장할 경우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 현재 서울시의회는 모두 10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활동 중에 있으며, 일부는 뚜렷한 활동이나 성과 없이 반복적인 연장을 통해 장기 존속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붙임자료).

- 또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소관사항 및 심사 안건을 살펴보면, 여러 상임위원회와 관련 되지 않고 한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경우들이 존재하여 특별위원회의 남설 이라는 지적도 있어왔음.
-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안 제37조제4항 신설),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연장사유와 활동 중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7조제8항).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특별위원회가 정해진 활동기한 내에 해당 특정 안건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최소한 15일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특별위원회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19대국회 국회법개정(2014.5.14.)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제대로 운영 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은 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에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 또한 광역의회 중 경기도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사유와 활동 중간보고서를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3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공개(안 제37조제7항)

- 개정안은 제출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으로 하여금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기본 조례는 특별위원회 활동의 사후조치로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할 뿐, 활동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규정 등은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의회 홈페이지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특별위원회 활동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4 종합 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개정안은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안전처리를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안전 심사가 이뤄지게 하는 등 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붙임**서울특별시의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현황 (2017. 12월 기준)**

특별위원회 명칭	최초 활동기간	기간연장	연장 횟수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2014. 9. 16 ~ 2015. 3. 15	2015. 3. 16 ~ 2015. 9. 15 2015. 9. 16 ~ 2016. 3. 15 2016. 3. 16 ~ 2016. 9. 15 2016. 9. 16 ~ 2017. 3. 15 2017. 3. 16 ~ 2017. 9. 15 2017. 9. 16 ~ 2018. 3. 15	6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2015. 4. 7 ~ 2015. 10. 6	2015. 10. 7 ~ 2016. 4. 6 2016. 4. 7 ~ 2016. 10. 6 2016. 10. 6 ~ 2017. 4. 6 2017. 4. 7 ~ 2017. 10. 6 2017. 10. 7 ~ 2018. 4. 6	5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2015. 4. 23 ~ 2015. 10. 22	2015. 10. 22 ~ 2016. 4. 22 2016. 4. 23 ~ 2016. 10. 22 2016. 10. 23 ~ 2017. 4. 22 2017. 4. 23 ~ 2017. 10. 22 2017. 10. 23 ~ 2018. 4. 22	5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2016. 2. 24 ~ 2016. 8. 23	2016. 8. 23 ~ 2017. 2. 23 2017. 2. 24 ~ 2017. 8. 23 2017. 8. 24 ~ 2018. 2. 23	3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2015. 11. 10 ~ 2016. 5. 9	2016. 5. 9 ~ 2016. 11. 9 2016. 11. 9 ~ 2017. 5. 9 2017. 5. 9 ~ 2017. 11. 9 2017. 11. 9 ~ 2018. 5. 9	4
여성 특별위원회	2017. 2. 17 ~ 2017. 8. 16	2017. 8. 16 ~ 2018. 2. 16	1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 특별위원회	2017. 3. 3 ~ 2018. 3. 2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2017. 9. 6. ~ 2018. 3. 5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2017. 9. 6 ~ 2018. 3. 5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2017. 9. 6 ~ 2018. 3. 5		